

법령코너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9 - 0251호

승강기 안전부품의 인증 근거법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승강기 안전부품 인증기준 및 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5일
기술표준원장

승강기 안전부품 인증기준 및 운용요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안전부품에 대한 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승강기 안전부품 인증기준)

기술표준원장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안전부품의 인증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

1. 생산체제 평가기준 : 제조설비·자재검사설비·제조과정·품질관리·공정관리·시험검사 및 사후관리 등 승강기 안전부품 생산체제의 평가기준
2. 승강기 안전부품 안전기준 : 승강기 안전부품의 설계·제조·성능(조립 후 성능을 포함한다)에 관한 기준

제3조 (개별안전기준)

- ① 기술표준원장은 제2조제2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을 별표 1의 구분에 따라 승강기 안전부품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 안전부품의 개별 안전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안전기준명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4조 (생산체제 평가기준)

- 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체제 평가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 안전부품의 모델과 다른 모델 또는 다른 승강기 안전부품을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안전인증 받은 모델의 생산체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안전인증을 신청한 모델 또는 승강기 안전부품의 생산공정 등이 상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불구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생산체제를 확인할 수 있다.
- ④ 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체제 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생산체제 평가보고서의 양식을 별도로 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5조 (특수한 구조의 승강기 안전부품의 안전인증)

- ① 특수한 구조의 승강기 안전부품으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기준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안전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국제기준(ISO, IEC 등)
 2. 국내·외의 국가규격 또는 단체규격으로 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기준
(국제기준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기준 등이 없는 특수한 구조의 승강기 안전부품에 대하여는 그 구조 및 성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과 동등 이상이라고 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을 따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6조 (안전인증의 첨부서류 및 인증서발급 번호부여)

- ① 승강기 안전부품에 대한 안전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각호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술관련 서류(기계, 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을 말함)
 2. 제작설비 및 시험설비의 보유현황
- ② 승강기 안전부품에 대한 안전인증번호 부여는 별표 3과 같이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에 고시한 승강기 안전부품별 안전기준은 이 고시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이 고시 시행이전에 행한 승강기 안전부품에 대한 안전인증은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 기술표준 2009.7



기술표준원고시 제2009-0272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9일
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개정고시

반암물질인 석면을 전기용품의 구성 부품이나 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기 위해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 음

제3조

제적용 안전기준 I별표 II의 강제적용 중 K60335-1(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1부 일반요구사항)의 22.22항 중 “기기의 구조재로서 석면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함침을 실시한 석면으로 먼지나 석면섬유에 따른 먼지가 주위 공기 중에 부유하지 않도록 충분히 보호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않는다.”를 “기기의 구조재로서 석면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로 하고, 22.22항의 주석인 “이 항의 취지는 석면섬유 또는 먼지의 흡입으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다.”를 삭제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기술표준 2009.7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9-0285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 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5일
기술표준원장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일부 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 안전인증 규제로 인한 기업의 불편 및 비용부담 경감 등 규제완화를 위해 안전인증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모델을 주요 재질별로 구분?표시토록하며 주요 재질별 함량이 60%이상 되지 않는 불휴지도 적용
- 표시사항에 대해 '부직포의 조성 또는 혼용률 표시기준' 적용을 삭제하고, 주요 재질명을 표기토록 함

3.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개정 내용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중 부속서 8. 불휴지(불티슈)의 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009-0285호, 2009.6.25)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안전기준에 의해 안전인증을 받고 출고 또는 통관된 경우는 종전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 기술표준 2009.7



기술표준원 공고 제2009-0178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2조(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 등)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안전인증대상공산품 등의 범위) 제3항 관련 1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표시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리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6일
기술표준원장

입법예고 내역은 우리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www.kats.go.kr

| 기술표준 2009.7